가정에너지 절약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너지 절약]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태양열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방법과 친환경에너지를 설치 · 이용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너지 절약 1
1. 에너지 절약 개관 4
1.1. 에너지 절약 개요 4
1.1.1.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4
2. 전기 5
2.1. 전기 사용 5
2.1.1. 전기 사용하기 5
2.1.2. 전기요금 할인받기 6
2.2. 전기 절약 9
2.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및 사용 9
2.2.2. 대기전력 차단하기 10
2.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12
3. 도시가스 15
3.1. 도시가스 사용 15
3.1.1. 도시가스 사용하기 15
3.2. 도시가스 절약 16
3.2.1. 도시가스 절약하기 16
4. 자동차 18
4.1. 자동차 연료 사용 18
4.1.1. 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18
4.2. 자동차 연료 절약 19
4.2.1. 자동차 연료 절약하기 19
5. 친환경에너지 등 23
5.1. 태양광·태양열 등 23
5.1.1.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하기 23
5.1.2. 태양광 대여하기 24
5.2. 탄소포인트 24
5.2.1. 탄소중립포인트제 25

1. 에너지 절약 개관

1.1. 에너지 절약 개요

1.1.1.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에너지란?

▪ 에너지는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합니다(「에너지법」 제2조제1호).

▹ 연료는 석유·가스·석탄이나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에너지법」 제2조제2호).

에너지 절약이란?

▪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가정에서의 에너지 이용과 법령정보 제공범위

가정에너지의 종류(예시)

구분	내용
전기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말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자동차 연료	자동차 연료는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참조).
태양광·태양열 등	태양광은 태양에서 복사되는 빛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를 흡수·저장 및 열변환 등을 통해 얻어지는 무공해·무한정의 청정 에너지원을 말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법령정보 제공범위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위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2. 전기

2.1. 전기 사용

2.1.1. 전기 사용하기

전기 사용하기

> ※ **일러두기**
>
> ▪ 전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5조).
>
> ▪ 이 콘텐츠에서는 전기의 사용용도 중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용전력 사용

▪ 주택용전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

1. 주거용 고객(다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고객

전기요금 계산하기

전기요금이란?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 ※ **기본요금이란?**
>
> ▪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1호).
>
> ※ **전력량요금이란?**
>
> ▪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2호).

전기요금 계산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910원	120.0원	200kWh 이하	730원	105.0원
201~400kWh	1,600원	214.6원	201~400kWh	1,260원	174.0원
400kWh 초과	7,300원	307.3원	400kWh 초과	6,060원	242.3원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금의 청구

▪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② TV수신료, ③ 녹색프리미엄, ④ 제3자간 전력거래에 의한 요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의 <전기요금-요금계산·비교>에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때 계량기 보는 방법은 <계량기 읽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해당 월 요금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76조).

>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전기요금 할인받기

전기요금 줄이기

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할인받기

▪ ① 주거용 고객(다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의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할인기준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복지 할인받기

▪ ① 주거용 고객(다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과 같은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월 전기요금 (월 1만 6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만원 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 월 전기요금 (월 1만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 2천원 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월 전기요금의 8천원 (월 8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받기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세대별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 4개월동안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 이에 따라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항공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절약하기

▪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용요금의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단가가 낮은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한전ON)의 <전기요금-전기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전기-전기 절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전기 절약

2.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및 사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에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제2호 및 제5호 참조).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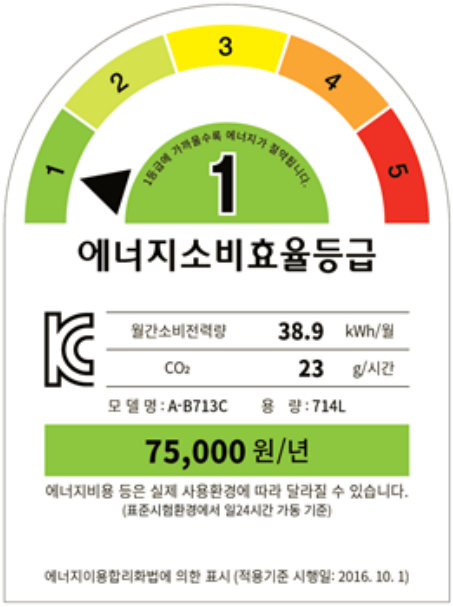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제재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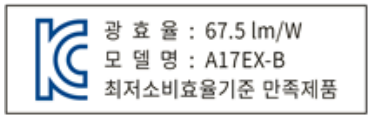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 그 밖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대기전력 차단하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절약

▪ 전기제품의 전원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제4호 참조).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3조).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 프린터	
▪ 전자레인지	▪ 유무선전화기
▪ 복사기	▪ 홈 게이트웨이
▪ 스캐너	▪ 자동절전제어장치
▪ 오디오	▪ 손건조기
▪ DVD플레이어	▪ 서버
▪ 라디오카세트	▪ 유무선공유기
▪ 도어폰	

대기전력저감 표시 방법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의무표시) 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습니다(「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6).





※ 대기전력경고표지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표 6 및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2. 전력저장장치(ESS)
2. 펌프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3. 스크류 냉동기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4. 무정전전원장치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5. 인버터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7. 원심식 송풍기	18. 등기구
8. 터보압축기	19. LED램프
9. LED 유도등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10. 항온항습기	21. 회생제동장치
11. 가스히트펌프	22. 공기-물 히트펌프

※ 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제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 다만,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ED 조명 성능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

3.1. 도시가스 사용

3.1.1. 도시가스 사용하기

도시가스 사용하기

도시가스란?

▪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서울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주택용)을 소개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계산하기

▪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요자는 기본요금에 사용열량(MJ)에 대하여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을 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제1항, 별표 4).

> ※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자료실-도시가스 요금표> 및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가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도시가스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 도시가스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회사 현황 및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도시가스 절약

3.2.1. 도시가스 절약하기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 이하의 내용은 K-GAS CASHBACK 사이트(k-gascashback.or.kr)의 <절약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실내 난방온도를 1℃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열 전달이 빨라져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외출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외출 기능을 활용하면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쪽으로 돌리기

▪ 수도꼭지가 "온수"쪽으로 있을 경우, 냉수 사용시에도 무심코 작동시켜 불필요하게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및 난방배관 "공기 빼기"

▪ 연료의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나 재와 물 속의 스케일 성분으로 열효율이 나빠지므로 가을철 사용 전에 내부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는 물을 난방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증발 등을 통해 배관 내 공기가 형성되어 열전달 효율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공기를 제거하고 보충수를 충분히 공급해주는게 필요합니다.

방한용품 및 보온용품 활용하기

▪ 에어캡이나 커튼, 카페트, 난방텐트를 활용하거나 실내에서 내복, 기능성 발열내의 등 보온용품을 착용해 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난방밸브 조정하기

▪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차단(메인) 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합니다. 또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에는 문을 닫아 두어 열손실을 방지합니다.

<에너지절약 효과분석>

에너지절약 효과분석

안 쓰는 방의 난방밸브 잠그기				보일러 청소하기			
월 절감량	38.3Nm3	월 절감금액	25,923원	월 절감량	14.2Nm3	월 절감금액	13,007원
CO2 감축량	63kgCO2			CO2 감축량	31kgCO2		

한 가정 월간 난방에너지량(141.7Nm3, 한 가정의
연간 난방 사용량(13.Gcal)을 도시가스로 환산)의 20%를 절감 할 경우

보일러 온수 온도 조정하기(55℃ → 40℃)					
월 절감량	9.4Nm3	월 절감금액	8,610원	월 절감금액	2kgCO2

한 가정 1일 온수(200kg), 3-일 사용, 15℃ 온도 낮출 경우

<출처: K-GAS CASHBACK 사이트(k-gascashback.or.kr)-도시가스 절약가이드 참조>

4. 자동차

4.1. 자동차 연료 사용

4.1.1. 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 연료의 종류

▪ 자동차 연료로는 다음과 같이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와 같은 석유제품과 전기 및 바이오디젤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휘발유(가솔린)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30~20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불꽃 점화식으로 점화 플러그를 통해 전기 불꽃을 발생시키는 구동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경유(디젤)	원유를 증류하였을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250~35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압축 착화식으로 점화 플러그 없이 공기의 압축열을 이용한 자연 발화식 구동엔진에 사용되어 디젤 차량의 고속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을 말하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의 차량의 연료로 사용됨
압축천연가스(CNG)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으로서, 주로 시내버스나 굴삭기, 지게차 등의 연료로 사용됨
바이오 디젤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서 친환경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자동차 연료 바르게 사용하기

▪ 자동차 연료는 차량의 엔진에 따라 각각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할 경우 엔진 등 차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휘발유(가솔린)과 경유(디젤)의 혼유 사고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유 사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자동차 연료 절약

4.2.1. 자동차 연료 절약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확인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다음의 자동차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 승용자동차: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 ※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 ※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
> ※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비 표시방법이나 신연비 표시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절약하는 그 밖의 방법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확인하기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높은 타이어 사용하기

▪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b) 적용시점 : 2020.1.1. 이후















※ 그 밖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및 방법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에너지 등

5.1. 태양광·태양열 등

5.1.1.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하기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하기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 **주택지원사업이란?**
>
> ▪ "주택지원사업"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태양광·태양열 등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태양열 등을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의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을 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공공주택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사업소개-사업지원대상 참조].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보조금

▪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그 밖에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태양광 대여하기

태양광 대여하기

태양광대여사업

▪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지원 대상 주택

▪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태양광대여사업자의 선정

▪ 태양광대여사업의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태양광대여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대여사업자를 선정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한 태양광대여사업은 2021년 사업종료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참여기업소개에서 태양광 시공분야 검색>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시공기업에 문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2. 탄소포인트

5.2.1.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기

탄소중립포인트제란?

▪ 탄소중립포인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적용분야

▪ 탄소중립포인트는 다음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해당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실시항목

▪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실적확인을 위한 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 등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방법

▪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

-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실시항목

- 자동차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청방법

-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 참여자는 주행거리 산정 등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 참여자는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은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실천활동의 종류

-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 전자영수증 발급
  -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 일회용 컵 반환
  - 리필스테이션 이용
  - 다회용기 이용
  - 무공해차 대여
  - 친환경제품 구매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폐휴대폰 반납
  - 미래세대실천행동
  - 공유자전거 이용
  - 잔반제로 실천
  - 나무심기
  -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 장바구니 이용
- 개인용기 식품 포장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신청방법

▪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 참여자 별로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기업의 참여절차

▪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산정기준

▪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 자동차 분야의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감축률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방법 등

▪ 참여자의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 환산된 인센티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